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05

2021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현)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

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전반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 추진

○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시설, 장비 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 규　모 : 대지 2,010㎡, 건물 연면적 3,871㎡(지하1층/지상4층)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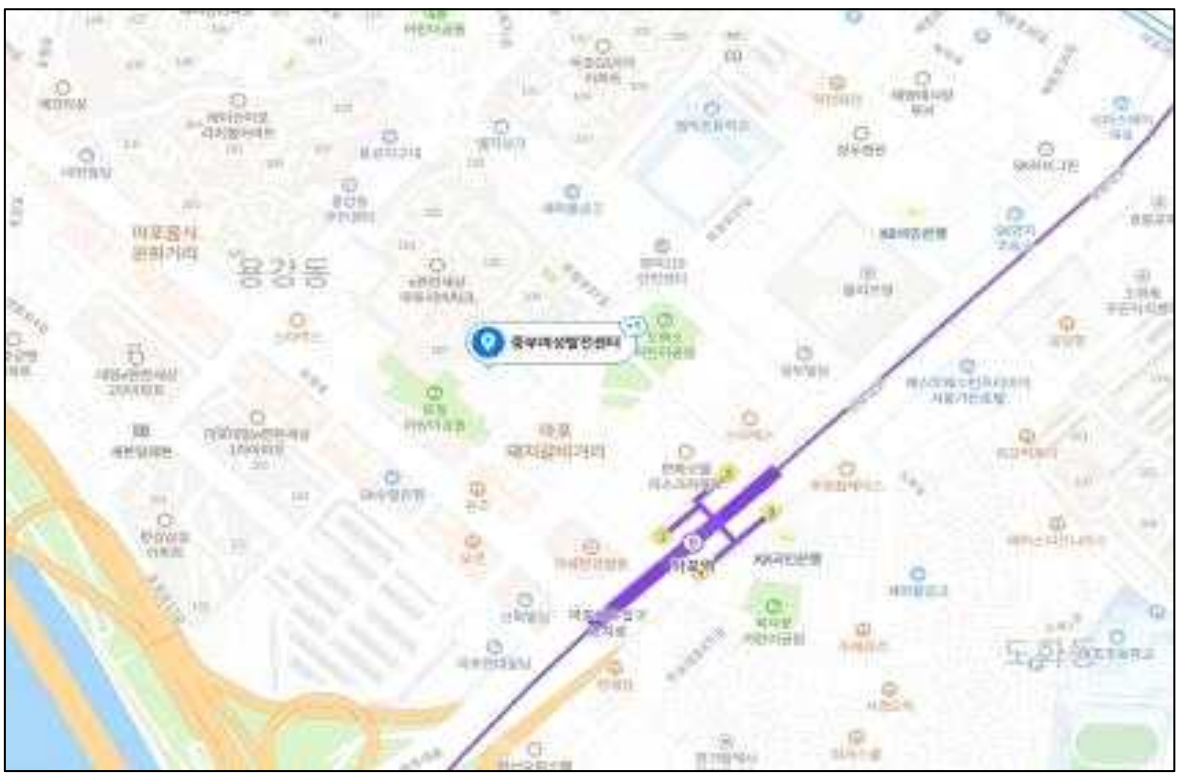

○ 시설현황 : 일반강의실, 정보화강의실, 실습교육실(피부미용, 조리, 헤어디자인, 의상실 등), 상담실, 중부새일센터 등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1.10.15 ~ 2024.10.14.)

바. 수탁기간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사. 소요예산 : 금971,943천원(2021년 예산)

- 인건비 544,332천원, 사무비 273,907천원, 시설비 153,704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5조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1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1]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2]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여성발전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3]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9조[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5]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의 부녀복지관 3곳(구로, 마포, 노원)을 1996년 9월 30일자로 개칭하여 현재 권역별로 동부, 중부, 남부, 북부, 중부의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초기에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다가 1999년 7월 중부여성발

---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 · 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 · 채용 · 교육훈련 · 승진 · 퇴직 · 경력개발 · 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임신 · 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 · 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 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 · 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 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과 같다.

②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9. 21.>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 · 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상담 · 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 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전센터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2002년 동부여성발전센터, 2003년 중부여성발전센터, 2004년 남부와 북부여성발전센터 순서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음.

○ 시장이 위탁하려는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사무의 구체적 내용과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 추진

-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시설, 장비 관리 등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경위>

□ `86. 12. 16.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개관
□ `86. 12. ~ `03. 10. 서울시 직영 운영
□ `03. 10. ~ `15. 10. 중부여성발전센터 (사)청년여성문화원 민간위탁 지정(1회차~4회차)
◂ 1회차 공개모집 '03. 10. 15. ~ '06. 10. 14.(3년, (사)청년여성문화원)
◂ 2회차 공개모집 '06. 10. 15. ~ '09. 10. 14.(3년, (사)청년여성문화원)
◂ 3회차 공개모집 '09. 10. 15. ~ '12. 10. 14.(3년, (사)청년여성문화원)
◂ 4회차 공개모집 '12. 10. 15. ~ '15. 10. 14.(3년, (사)청년여성문화원)
□ `12. 6월 4회차 민간위탁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동의(`12. 7. 9.)
□ `15. 10. ~ `21. 10. 중부여성발전센터 (사)행복중심생협연합회(現) 민간위탁 지정 (5회차~6회차)
◂ 5회차 공개모집 '15.10.15. ~ '18.10.14.(3년, (사)행복중심생협연합회)

◂ 6회차 공개모집 ’18.10.15. ~ ’21.10.14.(3년, (사)행복중심생협연합회)

□ `15년 6월 5회차 민간위탁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15. 6.25.)

□ `18년 6월 6회차 민간위탁추진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18. 6.19.)

□ `21년 4월 7회차 민간위탁추진계획 수립, `21년 6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7회차)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6] 및「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여성관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민간위탁조례」제4조[7]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

---

6)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서는 시장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사료됨.

○ 한편 2020년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으로는 5개 여성발전센터 중 2위로 총점 86.92점, A등급을 받았으나, 취·창업 성과 중 상용직취업 실적과 여성취약계층 실적, 구직실적이 각각 5개 센터 중 4위, 5위, 4위로 여성발전센터 평균점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소명을 가지고 부족한 영역의 취·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일자리창출 사업실적 중 취창업 성과>

구분	취창업 실적		상용직 취업실적		여성취약계층 실적		구직등록 실적		고용유지율	
	2019년 전체 취·창업자 수	점수	2019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점수	2019년 여성 취약계층 취업자 수	점수	2019년 구직 등록자 수	점수	고용유지율 (%)	점수
중부센터	2,945	5.0	867	0.5	8.	0.0	3,287	1.0	29.53	3.5
센터평균	2,278	4.2	1,258	0.5	30.4	0.5	4,052	1.1	29.1	3.1
센터표준편차	658	0.75	429	0.32	18.8	0.32	1,376	0.2	2.71	0.49
순위	2		4		5		4		3	

주 : 1) 취·창업 실적: 서울시 보고 운영실적의 전체 취·창업자 수
2) 상용직취업 실적: 워크넷 조회 기준 2019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3) 여성취약계층 실적: 2019년도 새일 실적 기준
여성취약계층(결혼이민여성, 여성가장 등) 취업자 수
4) 구직등록 실적: 통합관리시스템 상 2019년도 구직등록자 수(신규)
5) 고용유지율: 워크넷 실적 기준 2019년 고용보험 가입 인원 대비 90일 이상 고용유지

○ 또한 50+센터 및 캠퍼스,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관 간 경쟁이 증가하고 수강생은 줄어드는 등 여성발전센터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 여성발전센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3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405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나.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활동경험,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갖춘 여성 일자리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취·창업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전반

○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 추진

○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시설, 장비 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 규 모 : 대지 2,010㎡, 건물 연면적 3,871㎡(지하1층/지상4층)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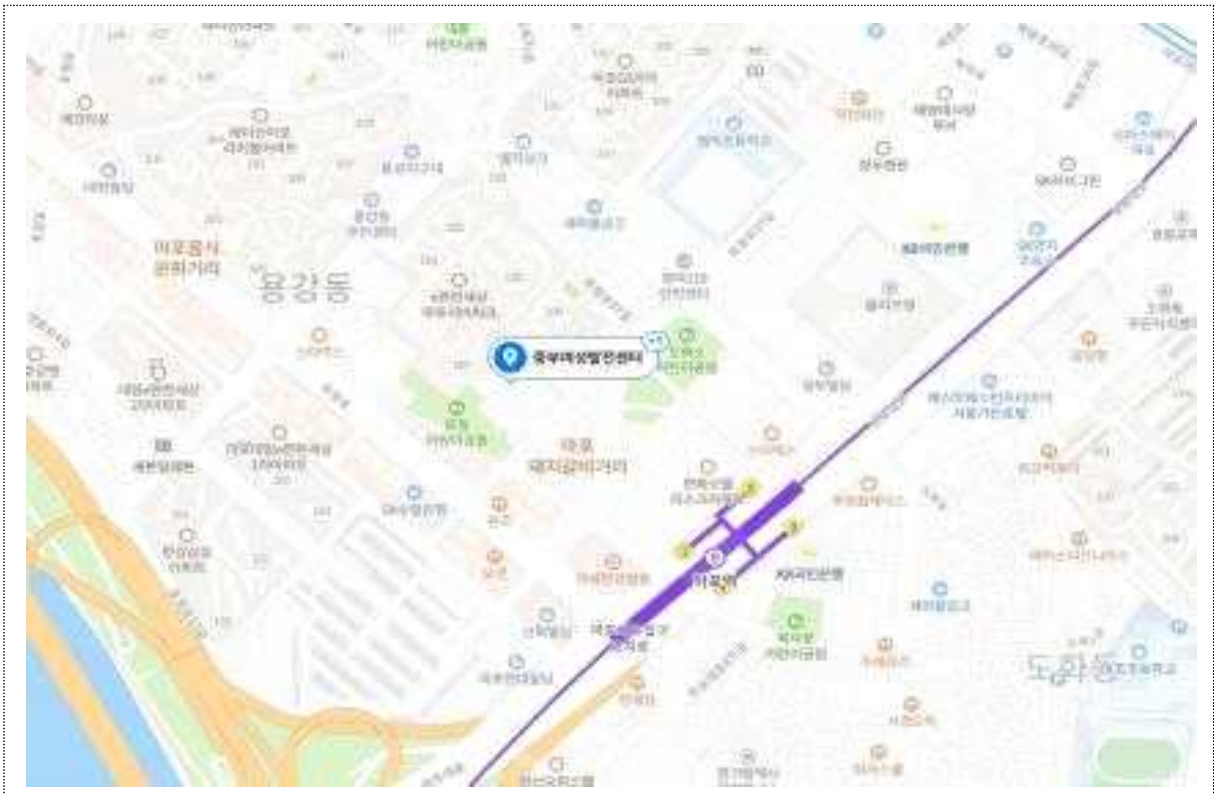

○ 시설현황 : 일반강의실, 정보화강의실, 실습교육실(피부미용, 조리, 헤어디자인, 의상실 등), 상담실, 중부새일센터 등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1.10.15. ~ '24.10.14.)

바. 수탁기간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사. 소요예산 : 금971,943천원('21년 예산)

○ 인건비 544,332천원, 사무비 273,907천원, 시설비 153,704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1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 별도 평가체계(여성능력개발원 주관)에 따라 실시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장재완(☎ 2133-5030)